

# 서울특별시 하이서울쇼룸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1180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3년 8월 14일  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## 1. 제안이유

- 가. 국내 패션산업에는 인력 및 재정 여건이 열악한 소규모 브랜드가 다수이며, 이들 브랜드는 디자인 역량에 비해 유통망 진입 및 판로 개척 등 판매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
- 나. 서울시는 소규모 패션브랜드에게 제품 전시 및 바이어 수주상담 등 국내외 판로개척을 지원하여 브랜드들이 성장하고, 나아가 패션산업이 활성화되도록 공동판매전시장인 '하이서울쇼룸'을 조성하여 2015년 11월부터 위탁운영 중에 있음.
- 다. 2023년 11월 5일자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나, 패션산업 활성화를 위한 판로지원이 필요하므로 공동판매전시장인 '하이서울쇼룸'을 재위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운영개요

- 위치 : 중구 을지로 281 동대문디자인플라자
- 시설명 :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디자인랩 1층 전시공간
- 규모 : 총면적 338㎡

## 나. 위탁개요

- 위탁사무명 : 하이서울쇼룸 운영
- 위탁유형 : 예산지원형, 사무형 위탁
- 위탁기간 : 2023.11.06. ~ 2026.11.05.(3년)
- 소요예산(안) : 1,900백만원 ※ 예산편성액 이내
  - '22년 / '23년 편성예산 : 2,861백만원 / 1,708백만원
-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(재위탁)
- 위탁사무
  - 국내 생산 기반의 서울 소재 패션브랜드에 쇼룸 공간 지원
  - 입점기업 대상 마케팅 교육, 컨설팅을 통한 브랜드 경쟁력 제고
  - 입점 패션브랜드의 국내·외 판로개척 지원
  - 동대문 상권과의 협력사업 추진을 통한 동대문상권 활성화 지원
  - 판로개척 및 브랜드 홍보를 위한 온·오프라인 플랫폼 발굴 등

## 다.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

- 제5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('23.7.20.) : 조건부 적정
  - ※ 조건 : 재계약을 재위탁으로 변경, DDP 쇼룸과 차별화된 운영계획 제시

## 3. 참고사항

### 가. 관계법령

- 「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4조의31 제1항 제3호

#### 제54조의 31(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지원)

- ① 시·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(이하 '종합지원센터'라 한다)를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#### 3. 공동전시판매장의 운영
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 및 제6조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
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6. 산업지원, 직업훈련,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
나. 예산조치 : 2024년 예산편성 시 반영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※ 작성자 : 경제정책실 뷰티패션산업과 김찬우 (☎2133-8777)